

2. 住宅供給에 關한 規則中 改正令

建設交通部令 第70號 1996. 6. 29

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하는 동포와 정부제3청사의 신축에 따라 대전광역시 둔산지역에 이주하게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하고,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 내용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993년도에 개최되는 국제무역산업 박람회의 참가자 및 운영요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, 대덕연구단지에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대덕연구단지안에 건설하는 주택 및 정부제3청사의 신축에 따라 당해 청사에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둔산지역 안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주택

- 외국정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하는 동포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

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항 제4호 중 “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세입자”를 “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”로 한다.

- 도시계획사업(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제외한다)으로 철거되는 주택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주택회보